

첨부 1 부정행위 기준 및 조서

부 정 행 위 기 준(실기구술시험)

1.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시험문제 및 답안을 알려주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4.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5. 시험장内外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변하는 행위
6.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7.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알려줄 것을 강요하는 등 폭력으로 다른 응시생을 위협하는 행위
8. 응시자가 시험시간 중에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시각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사용하는 행위
9.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10. 고사본부 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1.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2. 그 밖에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부정행위 관련 법 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